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관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불공정무역으로 인해 국내산업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의 구제조치인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세법상 절차 및 요건 등에 대해 세계무역기구 규범과의 합치성을 강화하는 한편, 덤핑 방지관세 규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비한 상계관세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이해관계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 강화(안 제59조제6항, 제60조제3항, 제64조제2항 및 제7항, 제70조제2항, 제71조제2항 및 제4항, 제73조제6항, 제74조제3항, 제78조제2항 및 제7항, 제84조제2항, 제85조제2항 및 제4항)

- 1) 조사개시 및 재심사 개시를 결정하여 통지하는 경우 조사신청서를 함께 제공하도록 하되 조사개시 후 공개하도록 규정함
- 2) 비밀취급 요청자료 대상에 서면 제출된 구두 자료를 추가함
- 3)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및 공고를 하는 경우에 ‘재심 최종판정시’를 추가함
- 4) 최종판정 전 핵심적 고려사항에 대한 통지의무를 신설함

나. 구두 정보의 증거력 인정절차 도입(안 제64조제8항, 제78조제8항)

구두정보가 서면 제출되어 공개될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구두정보가 조사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

다. 실질적 피해등의 판정 규정을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합치(안 제63조제1항, 제63조제4항, 제77조제1항)

1) 세계무역기구 협정상 산업피해 판정을 위한 지표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기술개발’을 산업피해 판정지표에서 삭제함

2) 세계무역기구 협정상 ‘덤핑물품’을 ‘덤핑’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있어 오해 발생 방지를 위해 ‘덤핑물품’으로 용어를 정비함

라. 재심사 요청 요건을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합치(안 제70조제1항, 제84조제1항)

현행 재심사를 위해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요청’하도록 되어 있으나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의 이익 보호를 위해 ‘명확한 정보를 제시하여 요청’하는 경우로 완화하여 규정함

마. 본조사시 조사기간 추가 연장(안 제61조제7항, 제75조제7항)

특별한 사유로 부과조치 기간을 18개월로 연장하는 경우 연장된 범위 안에서 조사기간도 2개월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바. 상계관세 규정을 덤핑방지관세 규정에 준하도록 보완(안 제73조제2항, 제3항, 제4항, 제74조제4항, 제75조제4항, 제7항, 제10항, 제79조제4항~제6항, 제81조제5항, 제84조제2항, 제3항, 제8항, 제11항, 제12항)

1) 관세청장이 수입사실 등 관련 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부과요청

절차를 보완하고, 품목분류 등은 관세청장과 협의하도록 규정

2) 조사시 관보게재 여부 및 조사기간, 재심사 절차 등을 현행 덤핑방지관세 규정 및 세계무역기구 규범에 합치되도록 규정

3) 수출국의 신규공급자에 대한 부과 규정 추가

4) 보조금등의 철폐 또는 삭감, 가격수정 등의 약속시 미이행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조치 및 적용기간 구체화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10. 13. ~ 11. 22.) 중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료는 조사를 개시한 후에 공개한다.

제60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당해 물품의 공급국 정부 및 공급자에게는 제59조제6항에 따른 신청서를 함께 제공한다.

제61조제7항 단서 중 “관보게재일”을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기간과 관련하여 2월의 범위 내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관보게재일”로 한다.

제63조제1항제4호 중 “· 이윤 · 생산성 · 투자수익 · 현금수지 · 고용 · 임금 · 성장 · 자본조달 · 투자능력 · 기술개발”에서 “기술개발”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덤핑외”를 “덤핑물품외”로 하고, “덤핑에”를 “덤핑물품에”로 한다.

제64조제2항 및 제7항 전단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 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전단 중 “열람”을 “제공”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자료열람 요청”을 “자료제공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이 구두로 진술하거나 협의한 내용은 회의 후 7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해당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를 “명확한 정보를 제시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게재하여야 한다”를 “게재하여야 한다. 이 때 당해 물품의 공급국 정부 및 공급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함께 제공한다”로 한다.

제71조제2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70조제5항에 따른 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을 한 때

④ 무역위원회는 제61조제5항 및 제70조제5항에 따른 최종판정 전 해당 판정의 근거가 되는 핵심적 고려사항을 관련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3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제3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상계관세 부과를 요청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해당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③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에 관한 검토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⑥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을 받은 사실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당해 물품의 공급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료는 조사를 개시한 후에 공개한다.

1.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3부

가.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특성·용도·생산자 및 생산량

나. 당해 물품의 수출국·수출자·수출실적 및 수출가능성과 우리나라의 수입자·수입실적 및 수입가능성

다. 당해 물품의 수출국에서의 공장도가격 및 시장가격과 우리나라로의 수출가격 및 제3국에의 수출가격

라. 국내의 동종물품의 품명·규격·특성·용도·생산자·생산량·공장도가격·시장가격 및 원가계산

마. 당해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관련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등

바. 수출국에서 당해 물품의 제조·생산 또는 수출에 관하여 지급한 보조금등의 내용과 이로 인한 당해 물품의 수출가격 인하효과

사. 국내의 동종물품 생산자들의 당해 조사신청에 대한 지지 정도

아.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자료를 비밀로 취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

자. 기타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과 당해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 3부

제74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당해 물품의 공급국 정부 및 공급자에게는 제73조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함께 제공한다.

제7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무역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대상물품의 품목분류 등에 대해서는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제75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본조사 종결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75조제7항 본문 중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 결과가 접수된 날부터 1월”을 “제5항에 따른 본조사 결과가 접수되면 제74조제3항에 따른 관보게재일로부터 12개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기간과 관련하여 2월의 범위 내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관보게재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상계관세의 부과조치를 할 수 있다.

제75조제8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무역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77조제1항제4호 중 “· 이윤 · 생산성 · 투자수익 · 현금수지 · 고용 · 임금 · 성장 · 자본조달 · 투자능력 · 기술개발”에서 “기술개발”을 삭제한다.
제78조제2항 및 제7항 전단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 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전단 중 “열람”을 “제공”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자료열람
요청”을 “자료제공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이 구두로 진술하거나 협의한 내용은 회의 후 7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해당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제79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3항 단서에 따라 신규공급자에 대한 조사가 개시된 경우 세관장은
그 신규공급자가 공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이를 수입하는 자료부터
담보를 제공받고 조사 완료일까지 상계관세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⑤제3항 단서에 따라 정한 상계관세율은 해당 조사의 개시일부터 적용
한다.

⑥제3항 단서에 따라 조사가 개시된 신규공급자의 가격수정 등의 약속
속에 관하여는 제8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
다. 이 경우 제81조제1항 전단 중 “제7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
의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은 “제79조제3항 단서에 따른 조사의 종결”
로 본다.

제81조제5항 중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가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이용”을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수락된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용”으로, “잠정조치를 실시하는 등 상계관세부과를 위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조치의 적용기간에 관하여는 제80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81조제5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6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조사를 계속하여 상계관세율 등 부과 내용을 정한 경우 : 상계관세의 부과
2. 제1호 외의 경우 : 법 제5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잠정조치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명확한 정보를 제시하여”로,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재심사의 필요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재심사 요청자, 해당 물품의 공급국 정부 및 공급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게재하여야 하며,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재심사 요청자, 해당 물품의 공급국 정부 및 공급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때 당해 물품의 공

급국 정부 및 공급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함께 제공한다.
제84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재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매년 그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4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 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기획재정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제2항 후단에 따른 관보게재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조치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제7항에 따라 재심사기간 중 상계관세가 계속 부과된 물품에 대하여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새로운 상계관세의 부과 또는 가격수정 등의 약속을 시행하는 때에는 제83조제1항 및 제3항의 예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⑪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한 자가 해당 요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뜻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재심사 개시 여부의 결정을 중지하거나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종결하도록 할 수 있다.

⑫제4항에 따른 조사를 위한 자료협조 요청에 관하여는 제78조를 준용하고, 법 제62조제1항의 재심사 결과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조치

중 상계관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79조를, 가격수정·수출중지 등의 약속에 관하여는 제81조제1항 전단, 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81조제1항 전단 중 “제7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은 “제84조제5항에 따른 조사의 종결”로, “무역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본다.

제85조제2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84조제5항에 따른 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을 한 때

④무역위원회는 제75조제5항 및 제84조제5항에 따른 최종판정 전 해당 판정의 근거가 되는 핵심적 고려사항을 관련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설>

④ (생 략)

제61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① ~ ⑥ (생 략)

⑦ 기획재정부장은 제5항에 따른 본조사 결과가 접수되면 제60조제3항에 따른 관보게재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 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보게재일부터 18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조치를 할 수 있다.

⑧ 삭 제

⑨ · ⑩ (생 략)

제63조(실질적 피해등의 판정) ① 무역위원회는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조사·판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질적 증

물품의 공급국 정부 및 공급자에게는 제59조제6항에 따른 신청서를 함께 제공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61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기간
과 관련하여 2월의 범위 내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관보게재일----

⑨ · ⑩ (현행과 같음)

제63조(실질적 피해등의 판정) ①

거에 근거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국내산업의 생산량·가동률
· 재고·판매량·시장점유율
· 가격(가격하락 또는 인상억
제의 효과를 포함한다)·이윤
· 생산성·투자수익·현금수
지·고용·임금·성장·자본
조달·투자능력·기술개발

5. (생략)

②·③ (생략)

④무역위원회는 덤핑외의 다른
요인으로서 국내산업에 피해를
미치는 요인들을 조사하여야 하
며, 이러한 요인들에 의한 산업
피해 등을 덤핑에 의한 것으로
간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4조(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
조요청) ① (생략)

②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
원회는 제1항 및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중
성질상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조사신
청자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
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하여

-----.

1. ~ 3. (현행과 같음)

4. -----

----- · 이윤
· 생산성·투자수익·현금수
지·고용·임금·성장·자본
조달·투자능력

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덤핑물품외-----

----- 덤핑물품에 -----
-----.

제64조(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
조요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1항, 제8항 -----

줄 것을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
는 당해 자료를 제출한 자의 명
시적인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
여서는 아니된다.

③ ~ ⑥ (생략)

⑦기획재정부장관 및 무역위원
회는 이해관계인이 제59조제4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관
계증빙자료와 제1항 및 제6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또는 통
보된 자료중 비밀로 취급되는
것외의 자료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자료열람요청은
그 사유 및 자료목록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⑧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
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
는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공청
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거나 상반된 이해관계
인과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후단 신설>

-----.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 제1항, 제8항 ---

----- 제공-----

-----.
----- 자료제공요청---

⑧-----

-----.
-----. 이 경우 이해관계인이
구두로 진술하거나 협의한 내용

제70조(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①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해관계인이나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요청하는 때에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거나 약속이 시행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 법 제56조 제1항에 따른 재심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의 요청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일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할 수 있으며,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 6월 이전에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재심사의 필요여부를 결정하여야 하

은 회의 후 7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해당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제70조(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①-----

----- 명
확한 정보를 제시하여 -----

-----.

1. ~ 3. (현행과 같음)

②-----

-----.

며,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재심사 요청자, 해당 물품의
공급국 정부 및 공급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관보
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 ⑫ (생략)

제71조(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공고 등) ① (생략)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
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
는 때에는 그 내용을 이해관계
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 8. (생략)

<신설>

③ (생략)

<신설>

-- 게재하여야 한다. 이 때 당
해 물품의 공급국 정부 및 공급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요청서
를 함께 제공한다.

③ ~ ⑫ (현행과 같음)

제71조(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공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8. (현행과 같음)

9. 제70조제5항에 따른 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을 한
때

③ (현행과 같음)

④ 무역위원회는 제61조제5항
및 제70조제5항에 따른 최종판
정 전 해당 판정의 근거가 되는
핵심적 고려사항을 관련된 이해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3조(상계관세의 부과요청) ①
(생략)

<신설>

<신설>

②·③ (생략)

④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으로 실질적 피해등을 받은 국
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무역

제73조(상계관세의 부과요청) ①
(현행과 같음)

②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상계관세
부과를 요청하기 전에 관세청장
에게 해당 보조금등을 받은 물
품의 수입사실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③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
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
에 관한 검토 요청이 없는 경우
에도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주무부장관
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④·⑤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삭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 · 규격 · 특성 · 용도 · 생산자 및 생산량

2. 당해 물품의 수출국 · 수출자 · 수출실적 및 수출가능성과 우리나라의 수입자 · 수입실적 및 수입가능성

3. 당해 물품의 수출국에서의 공장도가격 및 시장가격과 우리나라로의 수출가격 및 제3국에의 수출가격

4. 국내의 동종 · 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품명 · 규격 · 특성 · 용도 · 생산자 · 생산량 · 공장도가격 · 시장가격 및 원가 계산

5.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관련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등에 관한 사항

6. 수출국에서 당해 물품의 제조 · 생산 또는 수출에 관하여 지급한 보조금등의 내용과 이로 인한 당해 물품의 수출가격 인하효과

7. 국내의 동종 · 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 생산자들의 당해 조

사신청에 대한 지지 정도

8. 첨부한 자료를 비밀로 취급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
유

9. 기타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⑥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신청하
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
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을 받은 사실을 기획재
정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
과 당해 물품의 공급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료는 조사를 개시한 후
에 공개한다.

1.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3부

가.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
· 특성·용도·생산자 및
생산량

나. 당해 물품의 수출국·수
출자·수출실적 및 수출가
능성과 우리나라의 수입자
· 수입실적 및 수입가능성

다. 당해 물품의 수출국에서

의 공장도가격 및 시장가
격과 우리나라로의 수출가
격 및 제3국에의 수출가격
 라. 국내의 동종물품의 품명
· 규격 · 특성 · 용도 · 생
산자 · 생산량 · 공장도가
격 · 시장가격 및 원가계산
 마. 당해 물품의 수입으로 인
한 관련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등
 바. 수출국에서 당해 물품의
제조 · 생산 또는 수출에
관하여 지급한 보조금등의
내용과 이로 인한 당해 물
품의 수출가격 인하효과
 사. 국내의 동종물품 생산자
들의 당해 조사신청에 대
한 지지 정도
 아.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
부자료를 비밀로 취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
유
 자. 기타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
입사실과 당해 물품의 수입으

금등의 금액 또는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량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거나 실질적 피해등이 경미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⑤ · ⑥ (생략)

⑦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 결과가 접
수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상계관
세의 부과여부 및 내용을 결정
하여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상계관세의 부과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기획재정부장관은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보게재일부

-----.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본조사 종결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⑤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5항에 따
른 본조사 결과가 접수되면 제7
4조제3항에 따른 관보게재일로
부터 12개월 -----
--- 법 제57조에 따른 -----

---.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기간
과 관련하여 2월의 범위 내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관보게재일로부터 18개월 이내
에 상계관세의 부과조치를 할
수 있다.

<삭 제>

터 1년 이내에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상계관세의 부과조치를 하
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74조
제1항과 제75조제2항 및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보게재일부터 18월 이내에 상
계관세의 부과조치를 할 수 있
다.

⑨ (생략)

<신설>

제77조(실질적 피해 등의 판정)

①무역위원회는 제75조의 규정
에 의하여 실질적 피해등의 사
실을 조사·판정하는 때에는 다
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질
적 증거에 근거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국내산업의 생산량·가동률
· 재고· 판매량· 시장점유율
· 가격(가격하락 또는 인상억
제의 효과를 포함한다)· 이윤
· 생산성· 투자수익· 현금수

⑨ (현행과 같음)

⑩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무역위원회가 기획재정
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77조(실질적 피해 등의 판정)

①-----

-----.

1. ~ 3. (현행과 같음)

4. -----

----- · 이윤
· 생산성· 투자수익· 현금수

지 · 고용 · 임금 · 성장 · 자본
조달 · 투자능력 · 기술개발

5. (생략)

② ~ ④ (생략)

제78조(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① (생략)

②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1항 및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중 성질상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조사신청자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는 당해 자료를 제출한 자의 명시적인 동의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 ⑥ (생략)

⑦기획재정부장관 및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관계증빙자료와 제1항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또는 통보된 자료중 비밀로 취급되는 것외의 자료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지 · 고용 · 임금 · 성장 · 자본
조달 · 투자능력

5.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8조(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제8항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 제8항

제공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자료열람요청은 그 사유 및 자료목록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⑧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거나 상반된 이해관계인과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후단 신설>

제79조(상계관세의 부과) ① ~
③ (생략)
〈신설〉

<신 설>

자 료 제 공 요 청

(8)-----

-----. 이 경우 이해관계인이
구두로 진술하거나 협의한 내용
은 회의 후 7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해당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제79조(상계관세의 부과)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3항 단서에 따라 신규공급자에 대한 조사가 개시된 경우 세관장은 그 신규공급자가 공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이를 수입하는 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고 조사 완료일까지 상계관세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⑤ 제3항 단서에 따라 정한 상계

<신 설>

제81조(보조금등의 철폐 또는 삭감, 가격수정 등의 약속) ① ~ ④ (생략)

⑤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가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이용 가능한 최선의 정보에 의하여 잠정조치를 실시하는 등 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신 설>

관세율은 해당 조사의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⑥제3항 단서에 따라 조사가 개시된 신규공급자의 가격수정 등의 약속에 관하여는 제8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81조제1항 전단 중 “제7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은 “제79조제3항 단서에 따른 조사의 종결”로 본다.

제81조(보조금등의 철폐 또는 삭감, 가격수정 등의 약속)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기획재정부장관은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수락된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용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 .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조치의 적용기간에 관하여는 제80조제2항을 준용한다.

1. 법 제6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신 설>

⑥ (생 략)

제84조(상계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①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해관계인이거나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요청하는 때에는 상계관세가 부과되고 있거나 약속이 시행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 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의 요청은 상계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할 수 있으며, 상계관세 또는 약속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 6월 이전에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2월

조사를 계속하여 상계관세율 등 부과내용을 정한 경우 : 상계관세의 부과

2. 제1호 외의 경우 : 법 제59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잠정조치

⑥ (현행과 같음)

제84조(상계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명확한 정보를 제시하여 -----

----- 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

-----.

1. ~ 3. (현행과 같음)

②-----

--.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재심사의 필요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기획재정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를 하는 경우외에 부과중인 상계관세율 및 시행중인 약속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상계관세 또는 약속의 내용(재심사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매년 그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

이내에 재심사의 필요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재심사 요청자, 해당 물품의 공급국 정부 및 공급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게재하여야 하며,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재심사 요청자, 해당 물품의 공급국 정부 및 공급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때 당해 물품의 공급국 정부 및 공급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함께 제공한다.

③-----

입가격에 대한 재검토를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④·⑤ (생략)

⑥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제5항에 의한 조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당해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0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생략)

<신설>

⑧·⑨ (생략)

---. 이 경우 관세청장은 재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매년 그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⑤ (현행과 같음)

⑥기획재정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제2항 후단에 따른 관보게재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조치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현행과 같음)

⑧제7항에 따라 재심사기간 중 상계관세가 계속 부과된 물품에 대하여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새로운 상계관세의 부과 또는 가격수정 등의 약속을 시행하는 때에는 제83조제1항 및 제3항의 예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⑨·⑩ (현행 제8항 및 제9항과 같음)

<신 설>

<신 설>

⑪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한 자가 해당 요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뜻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은 무역위원회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재심사 개시 여부의 결정을 중지하거나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종결하도록 할 수 있다.

⑫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위한 자료협조 요청에 관하여는 제78조를 준용하고, 법 제62조제1항의 재심사 결과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조치 중 상계관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79조를, 가격수정·수출중지 등의 약속에 관하여는 제81조제1항 전단, 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81조제1항 전단 중 “제7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은 “제84조제5항에 따른 조사의 종결”로, “무역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본다.

제85조(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제85조(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공고 등) ① (생략)

②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 8. (생략)

<신설>

③ (생략)

<신설>

공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8. (현행과 같음)

9. 제84조제5항에 따른 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을 한
때

③ (현행과 같음)

④무역위원회는 제75조제5항
및 제84조제5항에 따른 최종판
정 전 해당 판정의 근거가 되는
핵심적 고려사항을 관련된 이해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연 락 처	(044) 215 - 4432